



LEGAL UPDATE

ESG센터

Aug. 2023

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세(CBAM) 보고의무 이행 법안 초안 발표

-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전환기간 동안의 탄소배출량 보고 이행 사항 규정 -

EU 집행위원회는 2023. 6. 13.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이행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2023. 7. 11.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2022. 12. 12. 도입에 합의한 EU 탄소국경제도(CBAM)는 2023. 10. 1.부터 2년 3개월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2023. 10. 1. ~ 2025. 12. 31.)이 예정되어 있는데, 금번 이행법안 초안은 해당 전환기간 중 탄소배출량을 보고할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단, 이행법안 초안의 적용대상은 우선적용대상으로 선정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에 그칩니다. 따라서 해당 업계의 이해당사자는 구체적인 이행법안 초안의 내용,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2022. 12. 12.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발표되고 2023. 5. 17. 법안이 최종 발효된 후, 해당 제도의 도입 및 연계된 EU ETS 개편과 관련한 EU 현지의 논의와 함께 국내에서도 산업부, 환경부 등이 대응현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EU 탄소국경제도가 우선적용대상으로 예정한 품목 중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업종이 국내 업계의 대 EU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 기인한 것입니다.

* 관련하여, EU CBAM의 도입에 관한 지난 진행경과는 다음의 화우 뉴스레터를 참조

EU 환경 규제화 동향(2023. 03.) ☞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37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합의 (2022. 12.)

☞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217>

탄소국경세 시대의 도래 (2022. 07.) ☞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0913>

위와 같은 진행경과 끝에, EU 집행위는 2023. 6. 1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전환기간 중 내재적 탄소배출량 보고의무에 관한 이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이행규칙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환기간 중 수입품의 내재적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이해관계자로부터 2023. 7. 11.까지 이행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발표된 이행법안 초안에 따라 전환기간(2023. 10. ~ 2025. 12.)까지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이후 2026년부터의 CBAM 본격 시행 및 2026 ~ 2034년 까지의 ETS 개편(무상할당 폐지)을 위한 이행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U ETS개편과 관련하여, 무상할당비율은 2026. 97.5%, 2028. 90%, 2030. 51.5%, 2032. 26.5%, 2034. 0%로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보고 당사자 및 보고항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을 받는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의 세관신고서를 제출했거나 그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는 **EU 수입업자**가, 수입품목의 탄소배출량 및 수입품의 원산지과 생산 공장에 관한 정보, 탄소가격 등을 보고해야 함.

- 수입품목의 탄소배출량은 **개별 사업장(생산공정)의 직접, 간접배출량 및 전력소비량,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기타 증빙자료**를 모두 포함함.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과 관련하여, 감면 대상 탄소가격(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는 배출권거래제)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발표하지 않음.
- **직접배출량과 관련하여, 수입품의 원산지, 생산시설, 생산공정 등에 따른 상품의 직접배출량을** 보고해야함
- **간접배출량과 관련하여서는, 전력소비량과 배출계수, 그리고 간접배출량 보고가 실제 배출량인지 또는 고정값(Default Value)인지 여부** 등을 상세히 보고해야함

나. 보고 절차 및 배출량 산정

2023. 10. 1.부터 수입업자는 분기별 배출량을 포함한 리포트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에 제출하고, 배출량 산정은 EU ETS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2024. 12. 31.까지는 개별국의 탄소가격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출량 보고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2025. 1. 1. 부터는 EU ETS의 기준만을 적용함).

- 보고의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전자식 데이터베이스인 CBAM Transition Registry가 설치되고, CBAM 보고서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곳에 등록되어 EU 집행위와 관할 당국, 보고의무자 등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게 됨

다. 보고서 검토 및 제재

EU 집행위원회는 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검토를 하고, 불성실한 보고서의 보고자 목록을 각 회원국 관할당국에 전달함. 또한, 보고되지 않은 배출량에 대하여는 1톤당 10~50유로 사이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예정. 구체적인 벌금의 액수는 관할 당국이 결정함

3. 시사점

현재 발표된 이행규칙의 초안은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과 공정 등 기밀정보를 모두 제공받은 뒤 이를 EU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기업의 기밀 유출이 우려되고, EU 역내기업들이 ETS 시스템에 따라 1년에 1회 보고의무가 있음에 비해 역외기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의무를 정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다수 존재합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부처(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등)에서 CBAM 보고의무 이행지침을 마련하거나 EU집행위 측에 의견을 전달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법안의 불명확한 내용 및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인 협의를 이어감과 동시에, 발표된 현행 법안의 내용 범위 내에서 한국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배출권 가격 부담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후 보고의무 대상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둬으로써 탄소국경제도(CBAM) 이행법안 시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김연각
변호사

T. (+82) 2 6182 8718
E. ygkim@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